## 초거대 AI 기반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 관리지침

제정 2024. 5. 10.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이하 "지능정보사회원" 이라 한다)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「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」 및 관련 부속지침 등에 의해 추진되는 초거대 AI 기반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(이하 "사업" 이라 한다)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「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」에서 규정한 부속지침, 지능정보사회원의 「ICT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」(이하"기금사업관리지침"이라 한다), 「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」(이하"선정평가운영지침"이라 한다)을 따른다.
- 제3조(용어의 정의)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1. "전담기관"이란 소관 부처 협약에 의하여 과제를 주관하여 추진·관리하는 기관으로 지능정보사회원을 말한다.
  - 2. "사업수행기관"(약칭 "수행기관"이라 한다)이란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주관 사업수행기관, 참여 사업수행기관 등을 통칭하는 것을 의미한다.
  - 3. "주관 사업수행기관"(약칭 "주관기관"이라 한다)이란 사업수행기관이 다수인 경우, 사업비 신청·관리 및 실적보고와 정산 등 해당 협약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업수행기관 또는 사업비 지분이 가장 많은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.
  - 4. "참여 사업수행기관"(약칭 "참여기관"이라 한다)이란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
  - 5. "수요기관"이란 과제에 참여하여 과제 수행의 결과 발생하는 유·무형의 결과물 또는 서비스를 수요자로서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기관을 말한다.
  - 6. "총괄책임자"란 수행기관에서 과제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
  - 7. "과제 매칭"이란 수요기관이 제안한 서비스 수요와 사업수행기관의 지원방안을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.
  - ②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용어 정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.
- 제4조(전담기관) ①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의 효율적 추진·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사업수행기관의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사업비 사용 등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

- 2. 사업수행기관이 수행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·시행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
- 3. 사업수행기관과 수요기관의 서비스 이용 수요 공급 연계를 지원
- 4. 수요기관 Pool 모집 및 사전안내 업무 등
- 5.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사업 점검과 관련한 소관부처 주무부서의 요청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및 상위 법령 및 규정에 별도로 지정한 업무 등

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,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또 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.

제5조(주관기관)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- 1. 과제 수행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
- 2.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
- 3.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,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
- 4.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
- 5.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
- 6. 과제수행 결과의 관리·활용
- 7. 유·무형 자산 및 결과물의 활용,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
- 8.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
- 9. 생성형 AI 서비스·플랫폼(LLM)을 이용한 수요기관의 제안 과제 구체화
- 10. 관련 기술, 서비스·플랫폼(LLM) 운영방안을 수요기관에게 공유하여 과제 매칭에 참여

제6조(참여기관)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- 1. 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
- 2. 사업비 중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
- 3. 과제 수행결과의 관리·활용
- 4. 유·무형 자산 및 결과물의 활용,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
- 5.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에 통보

제7조(수요기관) 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- 1. 유·무형 결과물의 이용 및 활용
- 2. 수행 서비스의 이용 및 활용
- 3. 그 밖에 과제의 수행 결과에 의한 이용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4. 전담기관이 주최한 수요기관 Pool 모집에 참여
- 5. 사업 참여신청서 작성
- 6. 서비스 수요를 주관기관에게 공유하여 과제 매칭에 참여

- 제8조(수요기관 Pool 관리) 전담기관은 사업의 수요를 파악하고, 원활한 매칭 지원을 위해 수요기관 Pool을 상시로 관리한다. 다만, Pool에 등록하지 않은 수요기관도 과제에 참여할 수있다.
- 제9조(사전 등록) ①주관 사업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전담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격조건, 구비요건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한 서류를 사전에 제출한다. 제출마감 일정은 공고문에 의한다.
  -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, 사업수행기관이 사전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검증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과제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한다.
- 제10조(수행기관의 선정) ①전담기관은 과제 수요, 수행범위 등을 고려하여 공모안내서 를 작성하고, 공모를 추진한다.
  - ②전담기관은 원활한 과제 추진을 위하여 과제 매칭을 지원한다.
  - ③전담기관은 제9조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수행기관에 한해 과제평가위원회를 통해 과제조정 대상기관을 선정한다.
- 제11조(공모과제의 추진)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제 공모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제 담당부서가 추진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